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8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임춘대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숙자,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34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및 도매시장 현황에 맞지 않는 용어,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여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함(안 제5조, 안 제14조, 안 제59조)
- 나. 법인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 변경 신고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변경함(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 다.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농안법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 라.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전연도’를 ‘전년도’로 정정함(안 제37조제1항)

마. 서울시 소재 도매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거래방법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제2항)

바.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변경함(안 제59조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4조, 제59조제1항 중 “공사 사장”을 “공사”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2조 제5항, 제14조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전연도”를 “전년도”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제8호의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이나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하여 <u>전년도</u>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p>	<p>----- ----- <u>전년도</u> -----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0조(거래단위) ① <u>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u></p>	<p>제40조(거래단위) <u>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도축 부산물은 생체 또는 지방이 포함된 고기의 중량을 기준한 품목별 등급을 설정하여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구분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거래할 수 있다.</u></p>	
<p>제59조(권한의 위탁) <u>가락동도매시장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u></p>	<p>제59조(권한의 위탁) ----- ----- ----- <u>공사에</u> -----.</p>
<p>1호 ~ 7호 (생략)</p>	<p>1호 ~ 7호 (현행과 같음)</p>
<p>8. 제13조에 따른 중도매업 <u>재허가</u>에 관한 사항</p>	<p>8. ----- <u>갱신허가</u>에 관한 사항</p>
<p>9호 ~ 12호 (생략)</p>	<p>9호 ~ 12호 (현행과 같음)</p>